

#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평창군수

2016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7. 3. 30. ~ 4. 18.(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장문혁(총괄)
  - 검사위원 : 이영목(일반회계 세입)
  - 검사위원 : 김두장(일반회계 세출)
  - 검사위원 : 조상현(특별회계 세입·세출, 금고결산, 기금)
  - 검사위원 : 신종해(공유재산, 물품관리, 채권·채무)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평 창 군 수 귀하

2017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 201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 1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평창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감사위원	장 문 혁	(인)	
감사위원	신 종 해	(인)	
감사위원	조 상 현	(인)	
감사위원	이 영 목	(인)	
감사위원	김 두 장	(인)	

2016년도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4
2) 세출	5
2. 일반회계	
1) 세입	6
2) 세출	6
3. 특별회계	
1) 세입	7
2) 세출	8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9
2) 채권	9
3) 채무	10
4) 공유재산	10
5) 물품	11
5. 세입·세출외현금	11
6. 검사결과	12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3

# 2016년도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6년도의 평창군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를 비롯하여 7개 기타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이 월 액
전년도 (2015)	471,117,492,757	484,508,195,097	477,191,450,207	1,125,732,380	6,191,012,510
해당연도 (2016)	545,049,286,258	560,783,094,581	554,427,985,120	1,532,087,892	4,823,021,569

#### 가. 세입결산 개요

- 2016년도 수납액은 554,427,985,12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로 나타남.

※ 2015년도

- 실제수납액 : 477,191,450,207원

(세입예산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8%)

##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2015)	420,631,242,000	49,660,894,907	212,205,850	613,150,000
당 해 연 도 (2016)	453,647,134,000	89,972,661,788	721,810,470	707,680,00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0	471,117,492,757	366,730,607,944	91,402,152,258	12,984,732,555
0	545,049,286,258	414,193,714,581	116,569,845,238	14,285,726,439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453,647,13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91,402,152,25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5,049,286,258원임.
- 지출액은 414,193,714,581원으로 예산현액의 76%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㉑)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 대비 율
		계㉒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5)	471,117,492,757	91,402,152,258 (1,891,877,000)	43,947,671,448 (1,391,877,000)	4,448,119,050	43,006,361,760 (500,000,000)	19.4%
당 해 연 도 (2016)	545,049,286,258	116,569,845,238 (4,590,000,000)	55,052,350,288 (4,240,000,000)	5,862,746,360	55,654,748,590 (650,000,000)	21.4%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2. 일반회계 세입·세출

### 1) 세입

(단위 : 원)

구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년도 (2015)	376,828,767,567	388,350,758,728	382,166,217,453	1,125,181,670	5,059,359,605
당해년도 (2016)	454,273,614,028	467,943,654,076	462,293,448,766	1,295,214,980	4,354,990,330

####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462,293,448,766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2%이고, 징수결정액은 467,943,654,076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임.

#### ※ 2015년도

- 실제수납액 : 382,166,217,453원 (세입예산액의 101%)
- 징수결정액 : 388,350,758,728원 (세입예산액의 103%)

### 2) 세출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전년도 (2015)	350,416,829,000	25,586,582,717	212,205,850	613,150,000
당해년도 (2016)	389,274,274,000	63,589,849,558	721,810,470	687,680,00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0	376,828,767,567	299,637,323,701	64,999,340,028	12,192,103,838
0	454,273,614,028	354,337,211,637	87,236,207,748	12,700,194,643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389,274,27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999,340,028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4,273,614,028원임.
- 이월사업비는 자금없는이월 4,590,000,000원을 포함하여 87,236,207,748원으로 예산현액의 19.2%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현액 대 비 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5)	376,828,767,567	64,999,340,028 (1,891,877,000)	40,144,326,578 (1,391,877,000)	4,321,349,370	20,533,664,080 (500,000,000)	17.2%
당해년도 (2016)	454,273,614,028	87,236,207,748 (4,590,000,000)	49,650,015,178 (4,240,000,000)	5,554,755,190	32,031,437,380 (350,000,000)	19.20%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이 월 액
전 년 도 (2015)	94,288,725,190	96,157,436,369	95,025,232,754	550,710	1,131,652,905
당해년도 (2016)	90,775,672,230	92,839,440,505	92,134,536,354	236,872,912	468,031,239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92,134,536,354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은 92,839,440,505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임.

※ 2015년도

- 실제수납액 : 95,025,232,754원 (예산현액의 101%)
- 징수결정액 : 96,157,436,369원 (예산현액의 102%)

##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2015)	70,214,413,000	24,074,312,190	0	0
당 해 년 도 (2016)	64,372,860,000	26,382,812,230	0	20,000,000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0	94,288,725,190	67,093,284,243	26,402,812,230	792,628,717
0	90,775,672,230	59,856,502,944	29,333,637,490	1,585,531,796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64,372,860,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402,812,2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0,775,672,230원임.
- 이월사업비는 29,333,637,490원으로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현액 대 비 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5)	94,288,725,190	26,402,812,230	3,803,344,870	126,769,680	22,472,697,680	28%
당 해 년 도 (2016)	90,775,672,230	29,333,637,490	5,402,335,110	307,991,170	23,623,311,210 (300,000,000)	32%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8,392,341,418	1,390,955,692	2,044,792,452	653,836,760	19,783,297,110
통합관리기금	8,168,292,033	-18,849,126	117,038,794	135,887,920	8,149,442,907
사회복지기금	5,666,581,946	758,445,855	826,314,855	67,869,000	6,425,027,801
체육진흥기금	3,489,779,417	343,478,263	361,478,263	18,000,000	3,833,257,680
식품진흥기금	113,907,787	2,203,024	42,831,644	40,628,620	116,110,811
재난관리기금	953,780,235	305,677,676	697,128,896	391,451,220	1,259,457,911

#####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서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18,392,341,418원 보다 1,390,955,692원이  
증가한 19,783,297,110원을 관리하고 있음.

#####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260,143,219	74,560,934	634,939,562	4,699,764,591
일반회계	4,111,217,910	40,196,991	296,249,541	3,855,165,360
특별회계	278,317,168	0	239,368,678	38,948,490
기 금	870,608,141	34,363,943	99,321,343	805,650,741

#####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5,260,143,219원에서  
- 74,560,934원이 발생, 634,939,562원이 소멸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99,764,591원임.

### 3)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4,753,000,000	14,627,000,000	16,345,000,000	1,718,000,000		39,380,000,000
일반회계	23,753,000,000	14,627,000,000	16,345,000,000	1,718,000,000		38,380,000,000
기타회계 (수질개선)	1,000,000,000	0	0	0		1,000,000,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 24,753,000,000원에서
  - 발생액은 16,345,000,000원이며, 1,718,000,000원이 소멸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380,000,000원임.

###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감(△)
용도별	합 계	2,398,820,531,548	2,638,435,519,373	239,614,987,825
행정 재산	계	2,344,681,595,829	2,584,284,311,177	239,602,715,348
	공용 재산	189,644,152,070	308,293,791,182	118,649,639,112
	공공용재산	2,148,451,188,467	2,185,484,522,130	37,033,333,663
	기업용재산	6,563,554,292	90,483,296,865	83,919,742,573
	보존용재산	22,701,000	22,701,000	0
일반 재산		54,138,935,719	54,151,208,196	12,272,477

가.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말 2,398,820,531,548원에서 239,614,987,825원이 증가한 2,638,435,519,373원으로

- 토지 129,326,018㎡ / 523,671,393,539원
- 건물 211,842㎡ / 323,061,860,734원
- 기타 1,496,073건 / 1,791,702,265,100원임.

## 5) 물 품

(단위 : 개,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57종	수량	880	28	19	9	30	9	21	878
	금액	7,913,539	120,504	60,673	59,831	290,629	14,590	276,039	7,743,414

가. 당해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7,743,414,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913,539,000원 보다 170,125,000원이 감소 하였음.

## 5. 세입 · 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387,661,945	-440,060,664	4,459,806,947	4,899,867,611	947,601,281
보 증 금	385,322,280	-88,524,280	98,156,080	186,680,360	296,798,000
보 관 금	799,899,747	-225,633,674	4,046,351,484	4,271,985,158	574,266,073
잡종금등기타	202,439,918	-125,902,710	315,299,383	441,202,093	76,537,208

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47,601,281원으로 전년도말 1,387,661,945보다 440,060,664원이 감소함.

※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금액임.

## 6. 검사결과

### □ 총 평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를 비롯하여 7개 기타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 평창군 직원들의 노력으로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5% 상승하였고 저성장시대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세입의 불확실 등으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도비 확보 노력과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주력한 결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에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회계관련 교육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 실제수납액은 462,293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7,94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 세출예산액은 389,274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99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4,273백만원으로 지출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실시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 세입결산액은 92,13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856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은**
    - 현재액 94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평창군 채무비율은**(지방채무액 39,380/총예산 453,647) 8%로서, 지금까지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재정자립도상 자립도는((지방세 24,860 +세외수입 19,866)/일반회계예산액 389,274) 11%로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하므로,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채권·채무액을 경감하고 불요불급사업을 억제하여 지속적인 지방부채 최소화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금회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16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 지 적 (건의 · 수범사례)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 고
1	이월예산 과다발생	
2	예산계상 및 집행관리 철저	
3	공유재산 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4	보조사업 신청 후 포기사례 방치 등 보조금 관리 소홀	
5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관리 철저	
6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7	2016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부적정	
8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관리 철저	
9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10	특별회계 징수결정 세입재원 예산편성 철저	
1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권고	
12	결손처분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13	평창군 금고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	수범사례
14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귀속으로 수입 증대 기여	수범사례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이월예산 과다발생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이 (2015년 - 219건 91,402,152천원, 2016년 - 195건 116,569,845천원)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 □ 검사자 의견

- 이는 사업 규모의 대형화 사업계획변경 및 공기부족, 토지보상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별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 임.

##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내역

(금액 : 천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명시이월	153	43,947,671	136	55,052,350
사고이월	38	4,448,119	24	5,862,746
계속비이월	28	43,006,362	35	55,654,749
계	219	91,402,152	195	116,569,845

##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건별)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계	153	136	38	24	28	35
기획감사실	3	1		1		
문화관광과	50	39	7	6	4	9
주민생활지원과	8		4	2	1	1
종합민원과	1	1				
자치행정과	1	2				
재무과	3	1				
경제체육과	7	8	1			
환경위생과	13	8	4	5	11	10
산림과	2	5	4	1	7	7
안전건설과	22	20		3	1	2
도시주택과	9	9	1			
올림픽추진단	5	2				
올림픽운영과		8	2			
올림픽시설과		7	2			3
상하수도사업소	7	8	4	1	4	3
보건의료원	2	3				
농업기술센터	20	14	9	5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 : 예산계상 및 집행관리 철저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계상하고 계상된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하나 2016년도 예산 중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 사업 외 34건, 199,913천원의 예산이 미집행 불용처리 됨.

## □ 검사자 의견

-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예산에 대하여는 이월조치를 하고 집행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은 최종 추경 시 정리를 통하여 계상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향후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 2016년도 예산미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35건		199,913		199,913
문화관광과	마하생태관광지 운영관리	30501	1,000	·	1,000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정지원	30109	1,000	·	1,000
	청소년복지증진	30109	3,000	·	3,000
	장애인생활향상	30101	900	·	900
	자활장려금	30101	23,000	·	23,000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	30101	1,000	·	1,000
	보육료지원	30711	769	·	769
	휴일 보육어린이집 지원	30101	6,000	·	6,000
	휴일 보육어린이집 지원	30710	3,000	·	3,000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인	30101	900	·	900
	성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30101	143	·	14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30101	714	·	714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30101	3,000	·	3,000
	동계올림픽청소년드림꾸러미	30705	10	·	10
	의료급여	50101	1,000	·	1,000
	장학금 및 학자금	30102	8,000	·	8,000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30111	500	·	500
	주택·건축행정건실화	20101	10,000	·	10,000
자치행정과	기초총계관리	20201	1,000	·	1,000
	창안제도운영	30301	5,000	·	5,000
재무과	공공운영비	20102	500	·	500
경제체육과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40201	8,000	·	8,000
환경위생과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20102	500	·	500
	민간단체 보전활동	30109	6,360	·	6,360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추진	20102	1,000	·	1,000
	인력운영비	10102	51,299	·	51,299
안전건설과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	30109	5,000	·	5,000
올림픽운영과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20103	10,000	·	10,000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	40501	1,000	·	1,000
농업기술센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104	12,500	·	12,500
	낙농경영개선지도	30111	5,000	·	5,000
	귀농인지원사업	30702	6,000	·	6,000
	FTA 축산 경쟁력 강화	30202	818	·	818
	가축질병근절	40201	12,000	·	12,000
	명태산업광역특구	30807	10,000	·	10,000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3
- 제 목 : 공유재산 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 현 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단가	감정가격(원)	비고
계	4필지		6,223		1,857,489,000	
창동리	396-38	학교	6,000	298,500	1,791,000,000	강원도교육감
창동리	401-1	전	141	325,000	45,825,000	"
창동리	410-6	답	63	252,000	15,876,000	"
창동리	410-8	답	19	252,000	4,788,000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이라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문 제 점

- 경제체육과에서는 봉평 전통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외 3필지 6,223m<sup>2</sup>를 매입하기로 하고 부지매입비 1,857,489,000원을 2016. 6. 27. 지출하였다.

## □ 검사자 의견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기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관련법령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4

○ 제 목 : 보조사업 신청 후 포기사례 방치 등 보조금 관리 소홀

○ 사업현황

(단위 : 명, 천원)

세부사업명	집행현황		집행잔액		
	사업자	집행액	사업자	불용액	집행율
계	29	10,645	26	9,855	
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지원	15	5,325	15	5,675	48%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14	5,320	11	4,180	56%

○ 문제점

- 산림과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 2월2일 공고하고 2016년 7월 5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2016년 12월 1일 사업추진 촉구를 하였음.
- 2개 사업은 55명의 보조사업자에게 총사업비 20,500천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지원 사업은 1개소당 710천원(군비 355, 자부담 355) 규모임.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은 1개소당 380천원(국비 80, 도비 36, 군비 84, 자부담 180) 규모임.
- 위 2사업은 보조율이 50%인 3,554천원과 보조율 53%인 200천원 사업으로서 자부담액 대비 보조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데 비하여 정산

절차 및 서류구비가 어려워 보조사업 신청 후 포기한 사례가 26건 (47%)임에도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보조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 검사자 의견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결정전 정산절차 및 정산서류 구비에 관한 교육실시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5

○ 제 목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관리 철저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제14조(보조신청) 제22조(보조정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83,179백만원으로 총예산액 453,641백만원에 대비하면 18.3%를 차지함.

○ 문 제 점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을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평창군이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서 보조금신청 · 보조금결정 및 통지 · 보조금지출 · 보조금정산 · 보조금검사의 과정에 있어 제반서류와 서식이 민간단체별로 서로 상이하고, 첨부서류 미첨과 체크카드와 통장 입·출금의 지출서류가 부정확하며 정산 미이행 등 보조금관리에 소홀함이 있음.

## □ 검사자 의견

- 향후 민간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시 평창군 보조금 검사부서에서 보조금 관련 각종 서류와 서식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매년 초 보조금 지출책임자를 소집하여 업무연찬을 통한 보조금 지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보조사업 종료 후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집행이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6

○ 제 목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 현 황

- 기술지원과에서는 2016년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지역 특성상 젊은 계층 감소추세에 따라 평창군도 예산편성 시 사업대상을 270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147명으로 감소하여 불용액 78,306,850원이 발생하였다.

○ 문 제 점

- 학자금은 1/4분기부터 매분기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매년 1/4분기가 지나면 불용액이 예측가능함에도 결산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므로 예산운영, 자금사정, 행정인력 중복투입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 □ 감사자 의견

- 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예산감액, 자금활용 등 노력이 필요.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7

○ 제 목 : 2016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부적정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평창군의 성과목표와 달성도는 81% 수준임(지표수/초과달성수, 달성수)

구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단위 사업수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미달성	
성과계획서	16	57	130	-	-	-	148
성과보고서	18	65	141	20	86	35	

○ 문제점

-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에 사업의 경우 달성목표를 사업량 또는 사업비를 표기해야 되나 백분율(%)로 표기하여 달성도 판단이 모호하고, 결산서에 전액 미집행 사업(35건 199,000천원)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을 성과보고서에 100% 집행·달성한 것으로 표기하였고, 초과달성(130%) 이상과 미달성(100%)미만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에 있어 초과달성지표는 성과위주의 원인분석과 미달성 지표는 부실위주의 원인분석이 되어야하나 사업량, 사업비 위주의 나열식 표기로 원인분석이 부정확함.

## □ 검사자 의견

-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신뢰성,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연찬을 통한 정확한 작성이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8

○ 제 목 :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관리 철저

○ 현 황

- 국도비 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은 보조주체로부터 보조금 확정 또는 내시통보를 받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의 착금 시 징수결정을 하고 있음.
- 이후 보조주체의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의 변동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확대·축소 등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기회를 통하여 조정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하여야 할 것임.

○ 문 제 점

- 2016년도 세입보조금의 경우 122,298,81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회계연도내에 착금된 114,720,593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6건 사업 7,578,217천원이 미착금 되거나 감액 결정 통지가 되었음에도 예산상 변경 조치 없이 결산을 한 사실이 있음.
- 그 내역을 보면 오대산명상마을 등 5건 4,608,363천원은 '17년도에 자금교부 되었고 올림픽시설진입도로 정비사업 등 12건 557,854천원은 감액 되었으며 대화소재지정비사업 등 8건 2,412,000천원은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미착금 상태임.

## □ 감사자 의견

- 보조사업의 보조금관리는 예산의 정당한 관리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착금, 증감 등 변동사항에 따라 즉시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9

○ 제 목 :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 현 황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실제수납액(C)	예산 대비 비율	
				B/A	C/A
지방세수입	24,860,436	33,363,660	30,497,613	74.5	81.5
세외수입	19,865,843	27,453,388	24,669,231	72.4	80.5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 대비 세입예산 편성율>

구분		2014	2015	2016	평균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76	77	74.5	75.8
	실수납액 대비	87	87	81.5	85.1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64	63	72.4	66.4
	실수납액 대비	76	76	80.5	77.5

## ○ 문 제 점

- 위 현황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은 24,860,43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3,363,660천원 대비 74.5%를 계상하였고 실제수납액 30,497,613천원 대비 81.5%를 계상하였음.
-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9,865,94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7,453,389천원 대비 72.3%를 계상하였고 실제수납액 24,669,213천원 대비 80.5%를 계상하였음.
-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수추계 방식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징수액과 추계산식에 적용되는 부동산 및 경제 동향 관련 데이터의 추계변수를 적용하여 반영하여나 하나 예산을 보수적으로 계상함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 검사자 의견

- 추경이나 정리추경 등을 통해 세입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0

○ 제 목 : 특별회계 징수결정 세입재원 예산편성 철저

○ 현 황

-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운영하는 회계로 당초예산 편성 시 세원에 대한 추계를 통해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추가 발생하면 징수결정과 세입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문 제 점

- 201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과 그에 따른 실제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재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특별회계명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주택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	2,903	2,903
	임시적세외수입	1,552	282,888	56,95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	4,206	4,206
	임시적세외수입	-	106,474	51,6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	3,517	3,517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325,477	416,715	416,596
	임시적세외수입	167,476	363,469	326,345

□ 검사자 의견

-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은 세입요인에 대한 철저한 추계를 통해 편성하고 세입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추경 등의 기회를 통하여 반영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1

○ 제 목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권고

○ 현 황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 제 점

- 평창군의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 임.  
(단위 : 원)

연도	총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	시군 순위
2014	29,237,564,402	127,559,150	0.436	
2015	33,736,592,728	61,019,610	0.181	11
2016	36,540,012,552	66,251,790	0.181	11

- 평창군의 추진 노력을 살펴보면 장애인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실과에 연3회 이상 구매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매월 구매실적이 저조한 실과에는 개별연락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을 하다보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녹색제품 등 타 제도와 유사하여 인식부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검사자 의견

- 본 제도는 정부 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된 군정 종합 평가 지표인 점을 고려하면 관내업체만으로 실적 제고가 어렵고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실과소 구매유도는 계약부서에서 권유하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2

○ 제 목 : 결손처분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현황

- 2016년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분야에 있어 군세 33,363,660,960원을 부과하여 30,754,662,150원을 징수, 이 중 과오납 반환액 257,048,990원을 제외하고 30,497,613,16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 542,185,380원 중 결손 부활하여 460건에 110,752,670원을 징수하였음.

○ 문제점

- 2016년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당해년도 체납발생액에 대하여 20건 92,688,980원을 관련법에 따라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음.
- 이는 체납액의 처분으로 얻는 행정상 이익도 있겠으나 당해년도 징수결정분의 결손처분은 지방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고액의 체납액 결손처분은 범망을 피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검사자 의견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르면 무재산이나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배분금액이 부족할때는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향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압류재산이 발견될 시 즉시 결손 부활하여 재산을 압류조치한 후 체납처분에 임하도록 세무부서에서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결산검사 수범사례

## □ 수범사례

○ 관리번호 : 13

○ 제 목 : 평창군 금고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6·7조 규정에 의거 농협 평창군지부에 금고를 지정하여 평창군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 출납 및 보관의 금고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평창군은 농협 금고로부터 매일 세입·세출 출납 상황과 현금 잔액을 파악하여 자금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도 금고의 출납 유동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금고 잔액을 유지하면서 금고잔액을 적기에 장기 순차적인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며, 이자수입목표 620,000천원에서 1,190,000천원(192%)의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서 금고의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평창군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모하였음.

# 결산검사 수범사례

## □ 수범사례

○ 관리번호 : 14

○ 제 목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귀속으로 수입 증대 기여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는 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3조 제4항에서는 반환기관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군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음

○ 추진현황

- 귀속대상 반환기간 5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요청(해당부서)
  - 2016. 6. 30일 기준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8. 31까지 반환, 세입, 보관연장 처리 요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2016. 9. 8. ~ 9. 23.(16일간), 2016. 10. 24. ~ 11. 8(15일간)
-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현금종류		공시송달		반환		귀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	499,291,525	2	8,198,610	36	491,092,915
보관금	소계	33	351,484,465	2	8,198,610	31	343,285,855
	건강보험료	12	2,894,000			12	2,894,000
	고용보험료	7	1,556,471			7	1,556,471
	기여금	1	118,700			1	118,700
	소득세	2	430,800			2	430,800
	일시보관금	4	333,309,230	1	7,815,760	3	325,493,470
	지방소득세	4	115,470			4	115,470
	채권압류	3	13,059,794	1	382,850	2	12,676,944
보증금	소계	2	11,505,490			2	11,505,490
	하자보수보증금	2	11,505,490			2	11,505,490
잡종금 기타	소계	3	136,301,570			3	136,301,570
	기금	2	27,039,970			2	27,039,970
	재해의연금	1	109,261,600			1	109,261,600

## ○ 검사자 의견

- 평창군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의견 조회 후 원금 491,093천원과 발생이자 24,615천원을 포함한 515,708천원을 세입 처리하여 평창군의 재정을 늘리고 보충하는데 기여하였음.